

문서번호	총무처-5995
보존기간	준영구
결재일자	2016.02.26.
공개여부	공개

★과장	팀장	총무처장	경영전략본부장	
협 조				

2016년 재정 조기집행을 위한 계약업무 처리절차 간소화 계획

2016. 2

『2016년 재정 조기집행을 위한』

계약업무 처리절차 간소화 계획

재정 조기집행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및 서민생활 안정화 지원을 위하여 2016.2~6.30까지 계약업무 처리절차를 한시적으로 간소화 하여 추진코자함.

※ 추진근거 : '16년도 재정조기집행 추진계획(이사장직무대행방침 제61호, '16.2.25)

주요 내용

- 수의계약 기준금액 완화 : 5백만원~1천만원 → **2천만원 이하**
 - 공사(1천), 용역·물품(5백) → 2천만원 이하 ※ 7개 예산과목에 한함
- 공고기간 단축 : 최소 3일~40일 → **3일~10일**
- 긴급입찰 발주 권장 : **긴급사유 “재정조기집행”** (지방계약법시행령 제19조 4항)
- 적격심사(7일) 및 계약체결(10일) 기간 단축 : **적격심사(3일), 계약체결(4일)**
- 대금지급 기간 단축 : 5일 → **1일(신청일 익일)** ※ 불가피한 경우 3일
- 준공(기성)검사 기간단축 : 14일 → **7일(발주처 협조사항)**

1 수의계약 기준금액 완화

- 법령보다 강화된 공단자체 기준금액 완화
 - 적용대상(대상과목) : 7개 과목
 - 일반운영비(사무관리비), 재료비, 연구개발비(연구용역비, 시험연구비), 시설비 및 부대비, 자산취득비, 정보화시스템취득비, 수탁자산취득비
 - ※상기 적용대상 제외과목은 현행 수의계약기준금액 및 절차 적용

○ 완화내용

구 분	현 행 (총무회계처-16092 호, '10.8.31)	개 선 (지방계약법령기준 준용)	
		금 액	적용기간
공 사	1천만원 이하	2천만원 이하	2016년 6월 30일까지 ※ 대금지급일 기준임
용역 및 물 품(구매)	5백만원 이하	2천만원 이하	

[기준 : 추정가격(부가세 제외 금액)]

※ 단, 사업부서에서 필요할 경우에는 소액입찰로 계약의뢰 가능

2 계약업무 단계별 처리기간 단축

□ 긴급입찰 실시 : 2016년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대상사업

○ 시행대상 : ~ 2015. 6. 30일 기간 중 발주사업

공고 기간	공 사	용역 · 물품	협상에 의한 계약	소액 입찰
당초 기간	○ 10억미만 : 7일 ○ 10~50억 미만 : 15일 ○ 50억이상 : 30일	○ 금액무관 7일	○ 1억미만 : 10일 ○ 1억~10억 미만 : 20일 ○ 10억이상 : 40일	3~5일
단축	5일	5일	10일	3일

※ 협상에 의한 계약 :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 기준

【권장】 상반기 발주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두 “**긴급입찰**”로 발주

→ 근거 :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5조 제4항 2호 “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”

□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 기간 단축 시행

○ 서류제출 : 7일 이내 ⇒ 4일 이내(자율유도)

○ 심 사 : 7일 이내 ⇒ 3일 이내

○ 계약체결 : 10일 이내 ⇒ 4일 이내(자율유도)

※ 발주부서(감독관) 계약내역 확인 후 계약부서 통보(즉시 계약체결)

준공(기성)검사 기간 단축 및 기성검사 정기 이행 - 발주처 협조사항

- 준공(기성)검사 기간 : 14일 이내 ⇒ 7일 이내
- 연간단가계약 기성검사 정기 이행(30일 단위)

3 선금 및 기성대가 등에 대한 신속 지급

신속한 대가지급 : 대금청구 후 5일 → 청구일 익일

선금지급

- 대 상 :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거나 제한기간중에 있지 않은 자로서 기성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경우
- 선금 의무지급율(30~50%) 적극 활용

선금 의무지급율	공사	제조 및 용역(구매제외)
계약금액의 30% 이상	100억원 이상	10억원 이상
계약금액의 40% 이상	100억원~20억원	10억원 ~ 3억원
계약금액의 50% 이상	20억원 미만	3억원 미만

- ※ 채권(보증서 등) 미제출 업체 질권설정(은행)을 통한 선금지급 가능
-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급

○ **공사계약 선금지급시 유의사항**

- **공사계약 건 중 노무비 구분관리 대상**(잔여 계약기간 30일 이상)에 해당되는 공사는 직접노무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선금지급(직접노무비는 선금지급 제외 대상)

※ 관련근거 : 행정자치부 예규[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] 제6장 『선금·대가 지급요령』 제2절

- 직접노무비에 대하여는 매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하고 발주자(감독자)는 지급내역을 확인
- 이월사업의 경우 지난해 선금을 지급하였더라도 금년에 추가 지급 가능 → 해당업체에 안내
- 선금지급 대상사업자 안내문(별첨) 개별 발송(팩스 등)

첨 부 : 선금지급 안내문 1부.

선금지급 안내문

안녕하십니까? 우선 우리공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약 파트너로 선정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. 최근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 귀 업체에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다음과 같이 선금지급 절차를 안내드리오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

□ 지급대상 : 공사·용역·제조(구매는 제외)

□ 지급범위 : 계약금액의 70%이내

선금의무지급 비율	공 사	용역·구매
계약금액 30%이상	100억원 이상	10억원 이상
계약금액 40%이상	100억원 미만 ~ 20억원 이상	10억원 미만 ~ 3억원 이상
계약금액 50%이상	20억원 미만	3억원 미만

※ 공사의 경우 계약금액에서 직접노무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청구

□ 청구절차

○ 청구서류 접수 : 조달청(나라장터) 혹은 공단(재무팀)으로 접수

○ 제출서류 - 나라장터로 접수시 첨부파일로 업로드

① 선금지급 요청서(공문) ② 선금사용계획서

③ 선금지급보증서(이자가산 및 60일 추가보증)

④ 각서 ⑤ 시·국제납입증명서 ⑥ 세금계산서 ⑦ 통장사본 ⑧ 청구서

※ 서식자료 : 공단홈페이지(<http://www.sisul.or.kr>) 시민광장/공단주요정보공개
/서식자료/선금지급신청

☎ 문의사항 : 총무처 재무팀 2290-4603~4,6153~4

※ 선금신청 전에 상기 전화번호로 연락주시어 신청금액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☞ 유의사항 : 선금은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사용하고 선금 전액 사용시 사용내역서 제출. 단, 공사의 경우 노무비는 선금지급대상에서 제외

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분임경리관 안찬